

(붙임)

## 「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

### I 개정 필요성

-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, 외식, 소매판매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강원 영동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 강릉본부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중 특별지원한도의 지원기간을 연장

### II 주요 개정내용

- 특별지원한도 대상 은행대출 취급기간을 4개월 연장
  - 2015. 8. 31 → 2015. 12. 31
- 운용기준<별표 5> 「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」 용어정비
  - 당좌거래정지업체 → 최종부도거래처

### III 시행일

- 2015년 7월 1일

Ⅲ 「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(안)

제1조~제6조 (생략)	제1조~제6조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
<p>제7조(특별지원부문) ① 제4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4년 9월 1일부터 <b>2015년 8월 31일까지</b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.)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~ ⑥ ( 생 략 )</p>	<p>제7조(특별지원부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4년 9월 1일부터 <b>2015년 12월 31일까지</b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.)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~ ⑥ ( 현행과 같음 )</p>	- 특별지원한도 운용기간 연장																
제8조~제15조 (생략)	제8조~제15조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
<b>(신 설)</b>	<b>부 칙 (2015. 6. )</b>	- 부칙 신설 - 시행일 명시 - 경과조치 마련																
<p>&lt;별표 5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40 1320 1202 1648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외규 사유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한도감축 배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기업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</td> <td>2.5배 이내</td> </tr> <tr> <td>폐업업체에 대한 대출</td> <td>1.5배 이내<sup>2)</sup></td> </tr> <tr> <td>당좌거래정지업체에 대한 대출 등</td> <td>2.0배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 :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)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(또는 소급)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(또는 소급)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</p>	외규 사유	한도감축 배수	대기업 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	2.5배 이내	폐업업체에 대한 대출	1.5배 이내 <sup>2)</sup>	당좌거래정지업체에 대한 대출 등	2.0배 이내	<p>&lt;별표 5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67 1320 2228 1648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외규 사유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한도감축 배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기업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</td> <td>2.5배 이내</td> </tr> <tr> <td>폐업업체에 대한 대출</td> <td>1.5배 이내<sup>2)</sup></td> </tr> <tr> <td><b>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</b></td> <td>2.0배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 :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)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(또는 소급)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(또는 소급)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</p>	외규 사유	한도감축 배수	대기업 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	2.5배 이내	폐업업체에 대한 대출	1.5배 이내 <sup>2)</sup>	<b>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</b>	2.0배 이내	- 용어정비
외규 사유	한도감축 배수																	
대기업 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	2.5배 이내																	
폐업업체에 대한 대출	1.5배 이내 <sup>2)</sup>																	
당좌거래정지업체에 대한 대출 등	2.0배 이내																	
외규 사유	한도감축 배수																	
대기업 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	2.5배 이내																	
폐업업체에 대한 대출	1.5배 이내 <sup>2)</sup>																	
<b>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</b>	2.0배 이내																	